

제434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임시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17일(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4)
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추가)

상정된 안건

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4) 1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6
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6

(17시57분 개의)

○소위원장 서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예비후보자후원회 등의 경과조치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률안 심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4)

○소위원장 서일준 의사일정 제1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동완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동완입니다.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현안 및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성실히 답변드리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지금 배부해 드린 정당법 제도개선 사항 관련 소위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당원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소 설치 규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조은희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현재 당원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에 한하여 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내용과 관련해서 교섭단체 협의 결과 설치 단위를 국회의원지역구로 해서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당원협의회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중앙당의 정기고 일정을 2월 15일까지로 변경하고 또 허위등록 신청죄의 요건 역시 ‘사무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한 자’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선관위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우리 위원회에서 지역별 필수 정당조직인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씩 설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국회의원선거구마다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설치하는 새로운 방식의 제도가 이제 도입되는데 우리 위원회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 적용을 엄격히 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등 정치개혁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서일준 말씀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이게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기존의 현행법에 보면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에서 이제 사무소를 둘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이 된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를 둘 수 있는 건 그 전에는 국회의원 사무소를 둘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당이 사무소를 국회의원선거구마다 둘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현행법 37조 3항에 보면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그리고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고 다만 협의회를 둘 수 있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그렇게 단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 정당이 운영하는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국회의원지역 구마다 각 정당마다 1개소씩은 둘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당원협의회가 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말은 당원협의회가 법적 조직이 된다는 소리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현행 정당법 3조에 보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각 시·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당원협의회 자체가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당원협의회가 정당이 아니더라는 말씀인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정당 자체는 아닙니다. 활동 자체는 만약에 해당 시·도당이 있는 정당의 당원협의회라면 그건 시·도당의 하부조직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시·도당이 없는 정당의 당원협의회라면 중앙당 소속의 하부조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저희가 정당법 개정을 계속 요구했던 건 뭐냐 하면 3조, 정당의 구성을 개정해 달라는 거였어요. 3조, 정당의 구성에 중앙당, 시·도당, 지구당 혹은 지역당 이렇게 구성을 바꿔 달라, 법적 지위를 갖춰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은 3조를 바꾼 게 아니라 37조(활동의 자유)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됐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가 그동안 사무실이 없어서 활동을 못 했던 것 아닙니다. 지구당이 법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들이 독자적인 활동 거기다 독자적인 회계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곧 200만 당원을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당 역사에서 지구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3조, 정당의 구성을 개정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건데 활동의 자유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수정안이 올라왔다는 게, 저는 이걸 정당법 개정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후퇴하는 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당과 지구당에 대한 부활, 과거 지구당의 부활을 희망하는 법률안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하는 법률안도 마찬가지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하는 법안으로 이번에 논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이렇게 정당법 개정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렇게 가면 마치 사무실이 없어서 정당활동이 안 됐던 것처럼 그것을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이 정당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원외 위원장들의 요구를 제대로 부응하는 개정안인가라는 걸 봤을 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수 위원** 저도 하나 질문……

○**소위원장 서일준**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지금 여기의 조문을 보면 일단 시군구, 읍면동 그 위에 국회의원지역구 별로 당원협의회는 둘 수 있고 사무소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를 둘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 사실은 지금 국회의원지역구 당원협의회와 또 자치구·시·군 당원협의회, 읍면동 당원협의회, 행정조직상으로 봤을 때는 시군구와 읍면동 이렇게 계층구조로 돼 있습니다마는 당원협의회도 계층구조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자치구·시·군 당원협의회는 없는데 읍면동 중에 특정 읍면동 당원협의회는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승수 위원** 특정 면 또는 특정 읍에만 당원협의회가 구성됐다 하더라도 사무소는 1개 둘 수 있는 거지요, 규정상으로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해당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딱 한 군데……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시·군이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돼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도 있으면 다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도 없는 지역구 같은 경우에, 군은 말할 것도 없고 아니면 특정 읍이나 면에 당원협의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무소를 설치했을 때 그 뒤에 후순위자가 당원협의회를 만들면 그 사무소의 위치와 관련해 가지고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이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적으로는 공간적 개념으로 보게 되면 딱 한 군데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선점을 해 버리면, 읍 당원협의회가 먼저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다가 사무소를 만든 이후에 그것보다 큰 시나 군 단위 당원협의회가 만들어졌을 때 대부분 잘 조정이 되겠지만서도 만약에 인근 시·군이나 또 다른 읍에 수평적으로 당원협의회가 만들어지거나 했을 때 주도권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은 당 내에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승수 위원** 하여튼 그런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기현 위원** 임피에 위원님이 이 정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씀을 하시고 저 또한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후퇴한 개정안이 아닌가, 애초에 여야가 합의하기로 했던 지역당 부활에 관한 것보다 더 후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정당법 개정안은 이번 지방선거와 특별히 직접 관계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더 논의한 다음에 처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민주당 윤건영 간사님 지금 안 계시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아마 행안위에서부터 치열하게 논쟁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양당 간의 합의문을 발표했는데 사무실을 둔다라고 하니까 언론에서는

지구당 부활이나 이렇게 반문을 해서 지구당 부활은 아니다…… 한 20년 전에 지구당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그 지구당에서 굉장히, 지구당 자체가 부패의 온상이다 해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지구당을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국민들은 사무소 설치가 지구당 부활 아니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번에 넣지를 않고 사무실만 둘 수 있다라고 양당 간에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당 간의 합의를 발표를 했지만 저는 민주당에서 반대하면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소위원장 서일준 예, 말씀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합의를 했고 발표를 했다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서일준 예.

○임미애 위원 제가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분명하게 회의록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합의 수준이면 여전히 원외 위원장의 정당활동은 불법이 되는 겁니다. 원내 위원장들이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국회의원 사무실도 둘 수 있고 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정작 지구당의 부활을 애타게 요구했던 사람들은 원외 위원장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은 원외 위원장들의 정당활동은 불법입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이걸 매우 실망스러운 안이고 오늘 어떻게 처리가 되더라도 이후에 이 부분은 다시 논의가 되어서 원외 위원장들의 정당활동이 합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당법이 개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건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서일준 하십시오.

○윤건영 위원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논의보다도 여야 간에 합의된 내용이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의식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시선의 지점들이 다르고 또 고민의 폭이 달랐던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을 겪어서 합의에 이르렀던 부분이 있으니 이 안은 여야 간사 간 합의한 대로 처리를 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다른 상임위나 또는 정개특위 남은 기간을 활용해서라도 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배준영 위원 글썄요, 민주당 입장이 정리가 되셔야지 저희가……

정리가 되신 겁니까?

○소위원장 서일준 민주당 입장 정리되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8시12분)

○소위원장 서일준 오늘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소위원장 서일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자구를 조정하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예비후보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와 같이 후원회 회계책임자 기존 후원금 모금 및 기부에 관한 경과 조치를 두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소위 법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관위 사무차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승수 배준영 서일준 송기현 송재봉 윤건영 임미애 조승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문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동완

법제국장 박세진